

충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1640

제출년월일 : 2014. 7.

제출자 : 충주시장

1. 제안이유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3항에 따라 신설·강화규제를 억제하고, 우리시 행정규제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충주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기능(안 제2조)

-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나. 위원회 구성 및 위원(안 제3조)

- 위원장(부시장)과 부위원장(호선) 각 1명 포함 위원 15명 이내
- 당연직 위원(6명)은 공무원, 위촉직 위원(8명)은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업·사회·경제관련 단체의 임원

다. 위촉위원 임기 2년, 한 차례만 연임(안 제4조)

라. 회의(안 제6조)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회의는 개최일 5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보

※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 소집 여유가 없는 경우 서면심의

마. 간사(규제개혁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 및 규제신고센터 설치(안 제8조 및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불임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의 : 해당없음

라. 그 밖의 사항

- (1) 입법예고 결과 : 의견없음
- (2) 규제심사 : 완료
- (3) 부패영향평가 : 완료
- (4) 성별영향분석평가 : 완료

충주시조례 제 호

충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 행정규제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3항에 따라 충주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행정규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부시장 소속으로 충주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④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의 교수
 2.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
 3. 기업·사회·경제관련 단체의 임원
 4. 그 밖에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 및 전문가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규제개혁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9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신고센터를 둔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발췌

□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적용 범위) ① 규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원이 하는 사무
2. 형사(刑事), 행형(行刑) 및 보안처분에 관한 사무
3. 「국가정보원법」에 따른 정보·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
4. 「병역법」, 「통합방위법」, 「향토예비군설치법」, 「민방위기본법」,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규정된 징집·소집·동원·훈련에 관한 사항
5. 군사시설, 군사기밀 보호 및 방위사업에 관한 사항
6. 조세(租稅)의 종목·세율·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서 정하는 취지에 따라 조례·규칙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 및 공표(公表),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규제의 정비, 규제심사기구의 설치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3조(설치)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둔다.

제2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규제정책의 기본방향과 규제제도의 연구·발전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4.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5. 규제 개선에 관한 의견 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6. 각급 행정기관의 규제 개선 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수반 요인

- 의안명 : 충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관한 조례안
- 관련조문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미첨부 근거규정

- 충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1. 연평균 1억원 미만의 비용이 예상될 때

3. 미첨부 사유

- 수당 등 지원($70천원 \times 8명 \times 12회 = 6,720천원$ 정도)

4. 작성자 : 창조정책담당관 장성철